

후
경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무-181.7	(전화번호 3 0 7)	관할기관 도	경
처리기관	제 1 부 시 장	시 장	전경사항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	기획관리관	<i>[Handwritten Signature]</i>	협	
조	법무담당관	<i>[Handwritten Signature]</i>	시민과장	<i>[Handwritten Signature]</i>
가	법제계장	<i>[Handwritten Signature]</i>	민사과장	<i>[Handwritten Signature]</i>
발				
기안책임자	김 문 중	73. 9. 14	호	
정 수 유 수 신 참 조	각 안 참 조	발 신	시 장	통 제
계 목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본부 운영규정중 개정			
(제 1 안) 내부결제				
현행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본부 운영규정에 외하면 관내에서 3개이				
상외 본부설치대상 사건이 발생시 경찰국 주무계장(경정)도 수사본부장이				
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계장이 본부장이 되는 경우 현 경찰국직				
제상 효율적인 수사지휘가 곤란한 실정으므로 이를 수사과장(총경)으로 변				
경하는 한편 이에 따른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법안과 같이 동.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훈령제 374호

결재
1973. 9. 25
시장실

검인
1973. 9. 25
시민과장
민사과장

0201-1-8A

190mm×268mm 백상지 40g/m²

1969. 11. 10. 승인

0690

(제 2 안)

수신

문화공보실장



제목

시보 게재 외뢰

서울특별시경찰국 수사본부 은영규 정 중 계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송

부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훈령 1 부 끝.



(료 령 안)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경찰국 수사본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3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경찰국 수사본부 운영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경찰국 수사본부 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주무 계장"을 "수사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경찰국 형사과장

2. 경찰국 수사과장(관내에서 3개이상의 본부설치대상사건발생시)

제6조 제2호중 "주무 계장"을 "수사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3 년 월 일 부쳐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현행 서울특별시수사본부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내에서 3개 이상의 본부설치대상 사건이 발생시 경찰국 주무 계장도 수사본부장이 될수있도록 되어 있는바 주무 계장(경정)이 본부장이 되는 경우 현 경찰국 직제상 효율적인 수사 지휘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이를 수사과장(총경)으로 변경하는 한편 이에 따른 관계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조
문
현
행

비
교
제
정

제2조 (수사본부의 설치) 경찰국장은 특별 중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국 형사과장 및 주무 계장 또는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수사본의 설치를 명하여 그 사건을 특별수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사본부장이 되는 자 및 그 임무) (1) 수사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찰국장이 지명한다.

1. 경찰국 주무 과장
2. 경찰국 주무 계장
3. 관할 경찰서 수사과장
4. 관내에서 3개 이상 외. 본부 설치 대상 사건 발생 시 본 경찰국 수사과장

(2)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 사건(이하 "본부 사건"이라 한다)의 수사본부 요원을 지휘 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제6조 (수사부본부장과 수사전임관이 되는 자 및 그 임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제2조 (수사본부의 설치) 경찰국장은 특별 중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국 형사과장 및 수사과장 또는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하여 그 사건을 특별수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사본부장이 되는 자 및 그 임무)

(1) 과 동

1. 경찰국 형사과장
2. 경찰국 수사과장 (관내에서 3개 이상 외. 본부 설치 대상 사건 발생 시)

3. 과 동
상 제

(2) 과 동

제6조 (수사부본부장과 수사전임관이 되는 자 및 그 임무) (1) 과 동

1. 경찰국 주무과장이 본부장이 되었을 때
 - 가. 경찰국 주무 계장
 - 나.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서장
2. 경찰국 주무계장이 본부장이 되었을 때
 - 가.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수사 과장
 - 나. 경찰국장이 지명하는 경정 또는 경감.
3. 관할지 경찰서 수사과장이 본부장이 되었을 때
 - 가.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형사 계장
 - (2) 수사부본부장은 수사본부장을 직접 보좌하며 수사본부 운영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인접 경찰국 석간의 공조 수사 지휘에 임한다.
 - (3) 전항의 편성에 있어서는 경찰국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을 수사 전임관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서의 경감 또는 경위를 부전임관으로 하여 수사본부의 중추로서 각각 수사의 추진에 임한다.
 - (4) 전임관과 부전임관은 별도 임명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며 전항의 대상자 중에서 수사본부장이 지정근무하게 한다.

1. 작 동
 - 가. 작 동
 - 나. 작 동
2. 경찰국 수사과장이 본부장이 되었을 때
 - 가. 작 동
 - 나. 작 동
3. 작 동
 - 가. 작 동
 - (2) 작 동
 - (3) 작 동
 - (4) 작 동

서울특별시

경부 181-32047

1973. 9. 5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법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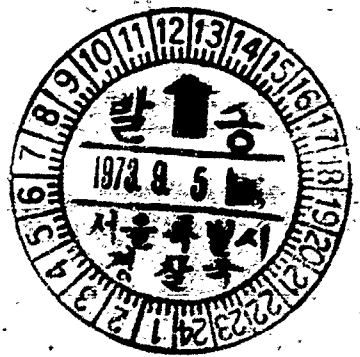
제목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본부 운영규정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본부 운영규정을 민원과 같이 개정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본부 운영규정(안) 3부. 경.

담	담	담	담	담	담

내무부총장
경찰국장
법무부장
민원과장



공민행동

상 국 상

공문서 규정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국장 고 동 철 전 결

서울특별시 운영 제 2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본부 운영규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1973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양 백 식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본부 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수사본부의 설치) 경찰국장은 특별중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국의 ^{관할지역 내의} 관제과장 또는 경찰서의 수사과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하여 그 사건을 특별수사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수사본부장이 되는자 및 그 임무)

(1) 수사본부장은 다음각조의 1에 해당하는 좌 중 에서 경찰국장이 지명한다.

1. 경찰국 형사과장

2. 경찰국 수사과장

(단 관내에서 3개이상의 본부설치 대상사건 발생시)

3. 관할지 경찰서 수사과장

(2)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 사건 (이하 본부사건이라 한다)의 수사본부요원을 지휘 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관리한다.

제 6 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3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개 정 사 유

1. 내부부 수사 821-1967 (73. 8. 22)에 의해 개정 조치함.

(별첨. 수사본부 운영규정 개정지시 참조)

신 구 대 조

인 행	개 정
<p>제 2조 (수사본부의 설치) 경찰국장은 특별 중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국 형사과장 및 주무계장 또는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하여 그 사건을 특별수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 5조 (수사본부장의 되는 자 및 그 임무)</p> <p>① 수사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찰국장이 지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찰국 주무과장 2. 경찰국 주무계장 3. 관할지 경찰서 수사과장 4. 관내에서 3개 이상의 본부 설치 대상 사건 발생시는 경찰국 수사과장 <p>②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 사건(이하 "본부 사건"이라 한다)의 수사 본부 요원을 지휘 감독하며 수사 본부를 운영 관리한다.</p> <p>제 6조 (수사본부장과 수사전임관이 되는</p>	<p>제 2조 (수사본부의 설치) 경찰국장은 특별 중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국의 관제과장 또는 경찰서의 수사과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하여 그 사건을 특별 수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 5조 (수사본부장이 되는 자 및 그 임무)</p> <p>① 수사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찰국장이 지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찰국 형사 과장 2. 경찰국 수사 과장 (단 관내에서 3개 이상의 본부 설치 대상 사건 발생시) 3. 관할지 경찰서 수사 과장 <p>②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 사건(이하 "본부 사건"이라 한다) 의 수사본부 요원을 지휘 감독하며 수사 본부를 운영 관리 한다.</p> <p>제 6조 (수사본부장과 수사전임관이 되는</p>

자 및 그 임무)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본부의 부
본부장이 된다.

1. 경찰국 주무과장이 본부장이 되
었을 때

가. 경찰국 주무계장

나.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서장

2. 경찰국 주무계장이 본부장이 되
었을 때

가.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수사 과장

나. 경찰국장이 지명하는 경정
또는 경감

3. 관할지 경찰서 수사과장이 본부
장이 되었을 때

가.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형사계장

② 수사부본부장은 수사본부장을 직접
보좌하며 수사본부 운영 관리의 원함
을 기하고 인접 경찰국 서관의 공조
수사 지휘에 임한다.

3) 전항의 전성에 있어서는 경찰국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을 수사
전임관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

자 및 그 임무) 1)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본부의 부
본부장이 된다.

1. 경찰국 주무과장이 본부장이 되
었을 때

가. 경찰국 주무계장

나.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서장

3. 관할지 경찰서 수사과장이 본부
장이 되었을 때

가.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형사 계장

② 수사부본부장은 수사본부장을 직접
보좌하며 수사본부 운영 관리의 원함
을 기하고 인접 경찰국 서관의 공조
수사 지휘에 임한다.

③ 전항의 전성에 있어서는 경찰국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을 수사 전
임관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서
의 경감 또는 경위를 부전임관으로
하여 수사본부의 총무로서 각각 수사
의 추진에 임한다.

④ 전임관과 부전임관은 범도 임명
절차를 오하지 아니하며 전항의 대상
자 중에서 수사본부장이 지정 근무

서의 경찰관 또는 경위를 부전임관으로
하여 수사본부의 총주로서 각각 수
사의 추진에 임한다.

④ 전임관과 부전임관은 별도 임명
검사를 으하지 아니하며 전항의 대
상자 중에서 수사본부장이 지정 군
두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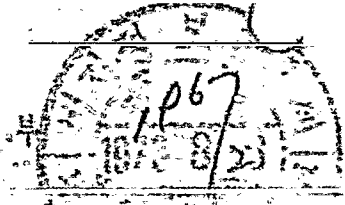
⑤ 수사본부장은 본부요원을 편성할
때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경찰
서로부터도 요원의 추천을 청할 수
있다.

⑥ 수사본부에 파견된 요원은 본부
장의 지시 명령에 절대 복종 하여야
하며 타시도 본부장으로 부터의
공조 제보는 성실히 신속히 처리
하여야 한다.

하게 한다.

⑤ 수사본부장은 본부 요원을 편성
할때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경찰서로부터도 요원의 추천을 청할
수 있다.

⑥ 수사본부에 파견된 요원은 본부
장의 지시 명령에 절대 복종 하여야
하며 타시도 본부장으로 부터의
공조 제보는 성실히 신속히 처리
하여야 한다.



내 부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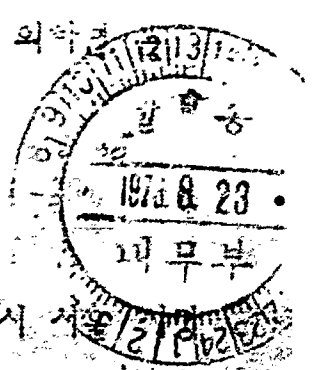
1973. 8. 22.

수사 821 - P67
 수신 서울 특별시장
 참조 경찰국장
 제목 수사본부 운영 규정 개정 지시

1. 기달 수사 821 - 1209 (73. 6. 25) 이 의거 서울 특별시 훈령 제 370호 (73. 8. 20) 로 개정 보고된 서울 특별 수사본부 운영 규정 개정 내용을 검토한바 제 5조의 " 수사 본부장인 되는 자" 라는 문장은 부장이 되는 자의 순위 규정이 없이 치안국 기장 직위에 위임된 개정을 하였으므로 즉시 시정 개정 조서로 73. 9. 5. 까지 결과 보고 받는다.

2. 치안국 제정 수사본부 운영 규정 준칙 제 5조에 의거한 부장이 되는 자의 순위를

- 가. 경찰국 주부 과장
- 나. 경찰국 주부 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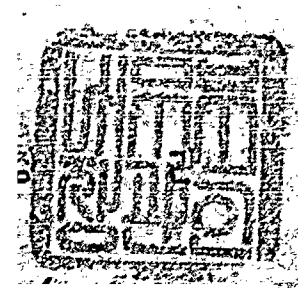
- 다. 관내에서 3개 이상의 본부 설치 대상 사건 발생시 서울 특별 수사 과장
- 다. 관할 지 경찰서 수사 과장으로 각각 개정 토로 지시한바 있음

3. 서울 특별은 지역적 특수 여건등을 감안한 수사본부 운영 규정 상(준칙) 경찰국 주부개장의 본부장이 될수 있는 것이므로 취해 서정 함것.

끝.

문서번호	문서명	처리	일	장	부	주	의	관	장	의	인

(Handwritten signatures and marks over the table)



0702